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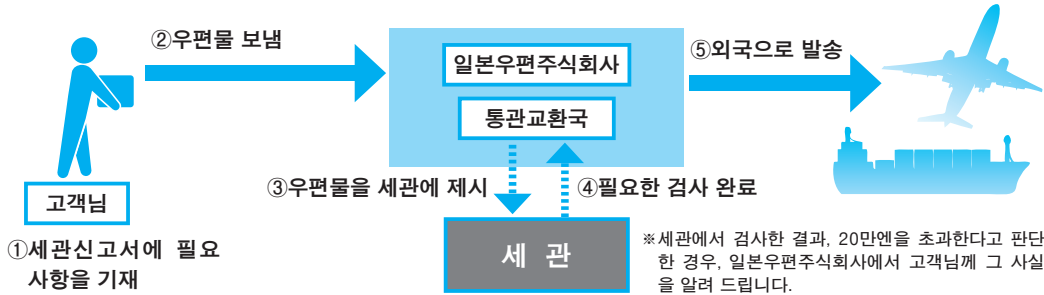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관절차 안내

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통관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편지만 포함된 것은 제외)은 통관절차를 거쳐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통관절차는 내용물의 합계 금액에 따라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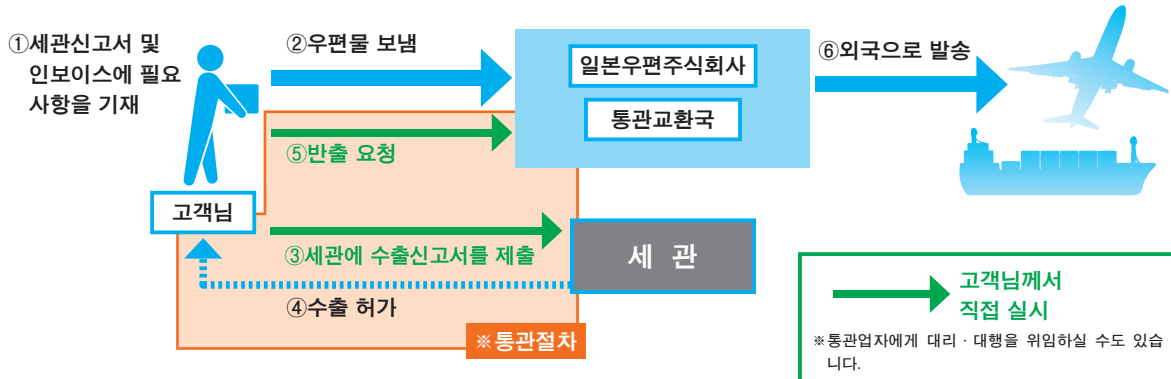
고객님께서 보내신 우편물을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세관에 제시하고, 세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2) 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고객님께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신 우편물은 일본우편주식회사의 통관교환국에 반입된 후, 수출신고가 필요한 우편물(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것)로서 통관 보류 상태로 분류되어 일단 통관교환국에 보관됩니다.

이 우편물은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관에서 필요한 심사·검사를 거친 후, 세관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편물은 수출 허가 후, 외국으로 발송됩니다.



2. 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을 보내시는 고객님께

통관절차 실시

수출신고가 필요한 우편물(내용물의 합계 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것)의 통관절차(상기 1.의 (2)의 ③, ⑤)는 수출 당사자이신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고객님께서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하신 통관업자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업자에게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

일본우편주식회사에게 통관절차 대리·대행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우편물을 보내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우편주식회사 이외의 통관업자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통관업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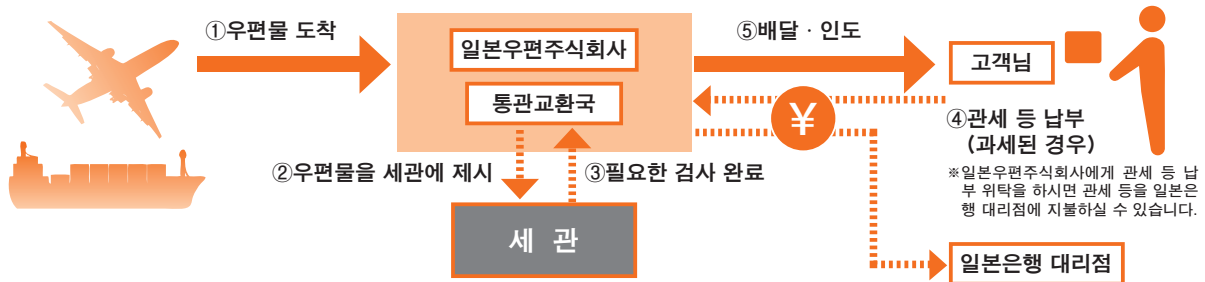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통관절차 안내

1.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통관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편지만 포함된 것은 제외)은 통관절차를 거쳐 고객님의 배달·인도됩니다. 통관절차는 우편물의 과세금액에 따라 다음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과세금액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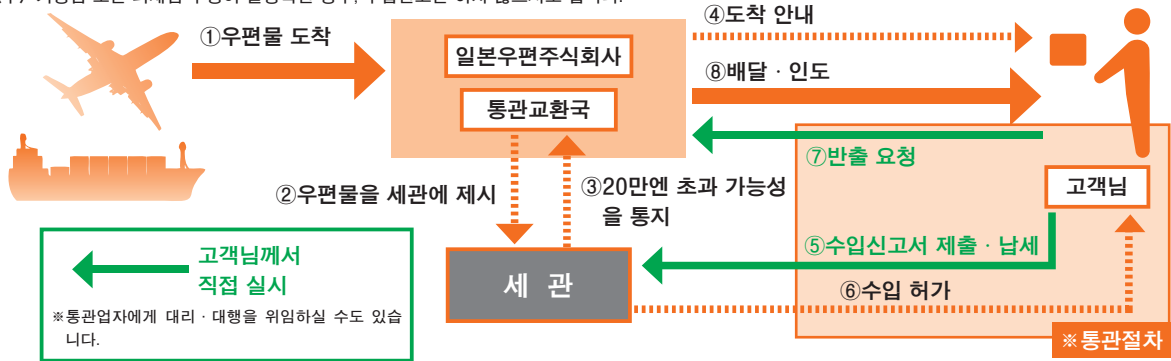
고객님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은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세관에 제시하고, 세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거친 후, 고객님의 관세 등을 납부(과세된 것에 한함)하시면 배달·인도됩니다.



(2) 과세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고객님께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도착한 우편물은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세관에 제시하고, 세관에서 검사한 결과,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과세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것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통관 보류로 분류되어 일본우편주식회사의 통관교환국에 보관되며, 그 사실을 통관교환국에서 고객님의 알려 드립니다.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 당사자이신 고객님의 직접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관에서 필요한 심사·검사를 거친 후, 관세 등을 납부(과세된 것에 한함)하신 다음, 세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편물은 수입허가 후, 배달·인도됩니다.

(주): 기증품 또는 과세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 수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을 수취하시는 고객님의게

통관절차 실시

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의 통관절차(상기 1.의 (2)의 ⑤, ⑦)는 수입 당사자이신 고객님의 직접 하시거나 고객님의게서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하신 통관업자가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통관업자에게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

일본우편주식회사에게 통관절차의 대리·대행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도착 안내(상기 1.의 (2)의 ④)를 받으실 때에 말씀해 주십시오(아울러, 세관 등의 납부는 고객님의 직접 세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본우편주식회사 이외의 통관업자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직접 통관업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